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가단1121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10.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4. 2.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4. 3. 7. 접수 제398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7. 26. E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1. 7. 22.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전129140호로 E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5. 1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385,771원 및 그중 2,057,180원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6. 3. 확정되었다.

나.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9.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D, E, 피고가 있다.

라. 망인은 1996.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부이다.

마. 망인의 사후 2024. 2. 22. D, E,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4. 3. 7. 접수 제39830호로 2023. 9.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외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3)을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장기간 망인을 보살피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등 부양한 사정이 고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망인이 사망하자 E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며, 피고는 협의 과정에서 E으로부터 채무초과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결국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협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망인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상당 정도의 금전적인 부양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피고의 건강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였으며, 망인을 간호하고 망인의 생활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피고가 제출한 생활비 내역을 보면, 2019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피고는 망인의 거주지 차임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확인된 총액만 해도 21,000,000원 이상이고, 이에 비추어 경제적 부양의 정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망인의 상속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데, 그 공시지가는 약 7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④ E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인 D 또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도 망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등 생전의 망인을 위해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여기에 반드시 기여분 협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생전 망인의 부양을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도 위와 같이 헌신 등을 한 피고의 특별한 기여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E 및 다른 상속인 D이 각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다면, 위 분할협약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E 및 다른 상속인 D의 각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의 각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기여분 협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E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방헤미

별지